간 사	위원장	학교장

제 83회 문산수억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 의 록

2018년 3월 27일(화요일) 16:00 ~ 15:00 (장소 : 학교운영회 협의회실)

Ⅰ. 2018학년도 1학년 테마형 수련활동(수련회) 운영 계획

Ⅱ. 2018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계획

Ⅲ. 2018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날짜 학교규칙개정

Ⅳ. 2017학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1부

Ⅴ. 2018학년도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

Ⅵ. 2018학년도 1학기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 및 부교재 현황

Ⅶ.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 계약건

<회순>

1. 개 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안건토의
5. 폐 회

◆ 간사

지금부터 제83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앞쪽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교원위원 (이OO)

<위원 및 참석 교직원 소개>

모두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7기 학운위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학교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박찬일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박우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OO)
11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83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미리 자료로 드렸던 테마형 수련활동 운영 계획 외 6건 안건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OO)
의사일정 제1항 테마형 수련활동 운영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 부장
2017년도와 유사하게 진행.
-일시: 2017년 4월 4일(수) 09시 - 4월 6일(금) 2시 30분(2박 3일)
- 장소 : 김포시청소년수련원
- 예상 인원 :1학년 237명(모집인원)중 참가예상인원 약 22명
- 지도교사
(1)인솔 책임자 : 이창석 교장선생님
(2)인솔교사 11명:1학년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교사, 특수대상자 담당교사
(3)업무분담

담당부서	업 무 분 담
단 장	수련단(교사,학생) 단체에 대한 총괄 지휘, 감독
부 단 장	학생활동 및 안전지도, 질서교육담당
주 무	여행 전반에 관한 계획, 총괄적인 처리
진행·섭외	계획에 의한 진행 및 확인
회 비	참가비징수, 상태확인, 제반 계약이행 상태확인
의 료	위생지도, 허약자관리·실내 환경 및 침구점검
식사관리	식사예절지도·식사전후 처리지도
안전지도	학생안전지도 및 관리
차량지도	차량의 승하차(인원점검) 및 차내 질서, 안전지도
질서지도 숙박지도	숙소 및 교육장소 주변의 자연보호 활동전개
사진촬영	학급 및 개인 사진촬영
생활지도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인원점검

(4) 예산변동: 91000원→10만원

1. 수련원 이용료
228명×@80,000 = ₩18,240,000
2. 왕복버스비
6대 @1,800,000×2일 =₩3,600,000
3. 역사박물관 입장료
228명×@1,500= ₩342,000
4. 예비비(간식비 포함)
1인당 2,710원 = ₩618,000

버스 이용료 및 역사박물관 입장료 상승으로 금액 상승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박OO)
불참 예정자 9명은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1학년 부장
운동부 및 장기 결석자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질문, 의견 없음>

◆ 부위원장 (박OO)
테마형 수련활동 운영계획 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부장
2017년도와 유사하게 진행.

- 기간 : 2018년 4월 4일(수) ~ 4월 6일(금) <2박 3일>
- 여행지 : 공주, 부여 일대의 명승지
- 참가인원 : 학생 252명, 인솔교사 13명, 사진기사 1 명 (총인원 266 명)

미 참가 학생들은 학교 국어교사의 독서 프로그램 시행 예정입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제주도 60명이 따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제주도를 선택한 학생이 없어 부여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OO)
둘째날 저녁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준비하는 것인가요?

◆2학년 부장
네 학생들이 직접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전면에서는 안전요원과 교사들이 학생들 식사 준비 과정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질문, 의견 없음>

◆ 부위원장(박OO)
2018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계획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날짜 학교규칙개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부장교사(백OO)
- 기존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 지침이 내려와, 본교에서도 이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 교칙을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가.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8호 (2014.1.16. 교육부훈령 제29호)

출결상황 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시행 방침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되 이를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연간 최대 20일 이하)

(학부모[학생]설문 조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기간을 정할 것)

◆ 부위원장 (박OO)
그럼 한번에 20일을 모두 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건가요?

◆ 교원위원 (이OO)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학부모나 위탁한 성인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교육기획부장교사
그리고 시험기간과 시험 후 일주일까지 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험 후 성적 확인이나 재시험 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질문, 의견 없음>

◆ 부위원장 (박OO)
2018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날짜 학교규칙 개정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학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2017학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최종 예산인 세입세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근거로 집행되었으며, 세입 총액 8,150,365,510원 ,세출 총액 8,070,125,900원으로 집행잔액 80,239,61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 및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외 14건 총 45,394,190원이 명시 이월되며, 보조금 반환 확정액 3,781,530원, 순 세계 잉여금 31,063,890원을 2018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급식실 식판 교체 구입비 및 학생교과운영경비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누계액을 보시면 각각의 사업별로 집행된 내역 으로 당초 예산 배정되었던 지원금 및 수입액의 변동으로 차액 발생된 사항이며 사업별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세입. 세출 2차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지원된 목적사업비는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은 나누어드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운동장관련 적립금 운용상황입니다. 적립금 운용대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5년간 교육청의 적립 허가를 받아 적립한 금액이 7,106,011원으로 잔디운동장을 보수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사업비를 이월 및 2018학년도부터 5년간 적립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 교원위원 (이OO)
총 45,394,190원은 체육 간이 시설 비용이죠?

◆ 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예산만 잡히고,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교원위원 (이OO)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려온 체육 간이 시설 비용인데 실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질문, 의견 없음>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2017학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2018학년도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다음은 2018학년도 세입세출 1차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입니다.
교원 수당등의 변동으로 인해 인건비의 변동폭이 다소 발생되었으며, 퇴직교원의 결원보충 및 병가등으로 대체된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고교 햑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비 42,000,000원외 15건 333,97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2017학년도 집행잔액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1차 추가경정 편성 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7,501,370,000원입니다.

◆ 교원위원 (이OO)
목적 사업 333,973,000원이 증액은 선생님들께서 공모한 사업이 확정이 되어 늘어난 금액입니다.

◆ 이OO 지역위원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반영이 되었나요?

◆ 행정실장
네 그것은 본 예산에서 이미 적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논의 사항 말씀드립니다. 농기계용 차량 구입에 대한 안건입니다.
기존에 학교의 관리구역이 넓어 경운기로 불용품이나 폐기물등을 운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 경운기가 노후되어 작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폐기물등의 처리가 많은 겨울철에는 운행이 안되는 실정이라
농업용 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가격은 오토바이식과 차량형태 두 종류로 안정성 및 성능을 고려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OO)
농업용 차량 구매 건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 행정실장
아니요. 이번 회의에는 구매예정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 행정실장
다음은 2017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안건은 아니지만 보고사항이라 알려드립니다. 2017학년도 학교발전기금 학생장학금으로 5,735,560원, 학생복지 및 교육활동교육비로 10,504,770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에너지에서 컴퓨터등 구매가격으로 78,470,660원 규모의 발전기금이 접수되어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학교 발전 기금 집행 잔액 2,628,110원은 이월 편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사업은 나누어 드린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내용에 따라 편성하고자 합니다.

◆ 교원위원 (이OO)
학교발전기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물품 및 금액을 받은 내역입니다. 화력발전소 5km 이내의 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제도에 의해 받았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운동부 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질문, 의견 없음>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2018학년도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2018학년도 1학기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 및 부교재 현황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부장
제82회 학운위에서 과목 개설 여부를 심의한바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이 확정되어 이번에 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1학년에서 2,3학년으로 갈수록 강좌수가 늘어나가 수강학생도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목의 세분화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부교재는 자체 제작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출판사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의 자료에 기재되었습니다. 총17명 선생님이 출판된 교재를 사용합니다. 심화 영어 수업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를 방과 후 학교에도 사용 중입니다. 총 32개 강좌, 271명 수강 중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위 안건에 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1학기 방과후 학교 개설강좌 및 부교재 현황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 계약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구부장
다음 사항은 방과 후 학교에 외부강사를 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모집한 결과 1학년에 “통합과학 - 나는야 아인슈타인”수업이 외부강사 수업을 개설되었습니다. 이 분과 외부강사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수업이 불가피할 경우에 강의한 시간의 몇 %를 강의료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학운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강사료는 교내 선생님과 동일한 시간당 4만원입니다. 하지만, 제9조의 1,2,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저희는 일단 제6조에 의거해 0~8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강사료 지급 및 방법)
③ “위탁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할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한 시간분의 00%
2.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한 시간분의 80%
3.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한 시간분의 80%

제9조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해지사유서를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기타 강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 부위원장 (박OO)
수탁자 분과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 교원위원 (이OO)
네. 저희가 정한 비율이 저희 학교가 임의로 정한바가 아니라 교육청 매뉴얼대로 정한 사항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수탁자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박OO)
수탁자분과 충분한 설명이 되고 동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방과후 학교 위탁강사 계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학운위 심의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진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위원>
박OO 조OO 이OO
이OO 이OO 이OO
김OO 백OO
< 8명 >

<참석교직원>
조OO(간사)
최OO(회의록 작성)
채OO(1학년 부장)
김OO (2학년 부장)
< 4명 >